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무역학 석사 학위논문

한국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역량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Origin Management  
Competency on the Export Performance  
in Korea Export Firms



2017년 2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강유정

본 논문을 강유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장 오 용 식 (인)

심사위원 김 재 봉 (인)

심사위원 임 재 욱 (인)



2017년 2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강 유 정

# 목 차

표 목차 .....	vi
그림 목차 .....	vii
Abstract .....	viii

제 1장 서 론 .....	1
----------------	---

## 제 2장 이론적 고찰

제 1절 원산지·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결정기준 .....	3
1. 원산지 .....	3
2. 원산지규정 .....	3
3. 원산지 결정기준 .....	5
1) 원산지 보충 규정 .....	8
(1) 최소허용기준 또는 미소기준 .....	8
(2) 누적기준 .....	9
(3) 롤업원칙 .....	10
(4) 불인정공정기준 .....	10
(5)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 등과 포장재료의 원산지 결정	10
(6) 직접운송원칙 .....	12
(7) 대체가능물품 .....	14
2) 원산지 인정 특례 .....	15
(1) 역외가공 인정제도 .....	15

(2) 재수입물품 .....	16
제 2절 원산지 증명 및 검증 .....	17
1. 원산지 증명 .....	17
1) 원산지증명방식의 종류 .....	17
2) 원산지증명방식의 비교 .....	19
3)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	20
4)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	22
2. 원산지 검증 .....	23
1) 원산지검증방식의 종류 .....	23
2) 원산지 검증절차 .....	25
3) 원산지 검증의 목적 .....	27
제 3절 원산지정보 유통·관리 .....	27
1. 원산지정보 유통 .....	27
1) 원산지(포괄)확인서 .....	27
2) 원산지정보 유통 경로 .....	28
2. 원산지정보 관리 .....	29
1) 원산지정보관리의 의의 .....	29
2) 원산지정보관리시스템 .....	29
제 4절 선행연구 .....	31
1. 원산지규정 관련 선행연구 .....	31
2. 원산지증명·검증제도 관련 선행연구 .....	32
3. 원산지정보 관련 선행연구 .....	33
4. 원산지관리역량 및 활용성과 관련 선행연구 .....	34

## 제 3장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제 1절 연구모형 .....	35
제 2절 연구가설 .....	36
1. 원산지 규정 이해도 .....	36
2. 원산지 정보 신뢰도 .....	37
3. 원산지 규정 관리정도 .....	38
4.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정도 .....	39
5. 수출성과 .....	40
제 3절 측정항목의 구성 .....	41

## 제 4장 실증분석

제 1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	42
1. 설문지 구성 및 자료의 수집 .....	42
2. 자료의 분석방법 .....	43
제 2절 연구의 결과 및 해석 .....	43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	43
2. 신뢰성 분석 및 타당성 분석 .....	45
1) 신뢰성 분석 .....	45
2) 타당성 분석 .....	47
제 3절 가설 검증 .....	57
1. 단순회귀분석 및 결과 .....	50
2. 다중회귀분석 및 결과 .....	53

1) 상관관계 분석 .....	53
2)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	54

## 제 5장 결론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	57
제 2절 시사점 .....	59
제 3절 향후 연구과제 .....	60
참고문헌 .....	61
설문지 .....	64



## 표 목차

<표 1> 원산지결정기준의 종류 .....	5
<표 2> 원산지결정기준의 특성 및 장·단점 .....	7
<표 3> 협정별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비교 .....	9
<표 4> 협정별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 원산지결정 비교 .....	11
<표 5> 협정별 소매용·수송용 포장재료 및 용기 원산지결정 비교 .....	12
<표 6> 협정별 대체가능물품 적용범위 비교 .....	14
<표 7> 협정별 역외가공 인정제도 비교 .....	16
<표 8> 원산지증명방식의 특성 및 장·단점 .....	19
<표 9> 원산지증명서 서류보관 .....	21
<표 10> 협정별 인증수출자 혜택 .....	22
<표 11> 원산지검증방식의 장·단점 .....	24
<표 12> 협정별 원산지 검증방식 비교 .....	25
<표 13>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현황 .....	38
<표 14> 측정항목의 구성 .....	41
<표 15> 응답기업 업종별 현황 .....	44
<표 16> 응답기업 종업원 수 현황 .....	44
<표 17> 응답기업 주력시장 현황 .....	45
<표 18> 응답기업 FTA활용 여부 .....	45
<표 19>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	47
<표 20> KMO와 Bartlett의 검정 .....	49
<표 21> 요인분석 결과 .....	49
<표 22> 상관관계표 .....	54
<표 23> 다중회귀분석 가설검증 결과 .....	56



## 그림 목차

<그림 1> 직접운송원칙의 적용사례 .....	13
<그림 2> FTA별 원산지 증명 방식 비교 .....	18
<그림 3>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절차도 .....	20
<그림 4> 원산지 직접검증 절차도 .....	26
<그림 5> 원산지 간접검증 절차도 .....	26
<그림 6> 원산지정보 유통경로(국내거래단계) .....	28
<그림 7> 원산지정관리시스템 구성도 .....	30
<그림 8> 연구모형 .....	35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Origin Management  
Competency on the Export Performance  
in Korea Export Firms

Kang Yu Jeong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South Korea has decided to apply the FTA as a major means of national trade policy, and is pursuing a simultaneous multilateral FTA policy. The FTA rule of origin is used as a powerful trade policy instrument that affects the market access of goods and investment decisions of capital. In addition, not only is it different in each FTA agreement, but also because it acts as a trade barrier due to the ambiguity, complexity, and different applicability of the decision criteria of origin, its role and importance are significant. Despite this importance, however, the extent to which domestic companies are interested in decision criteria for origin is very low. In order to improve price competitiveness and expand exports, it is essential to prove the origin of the FTA and to secure the capacity of companies to utilize FTA's rules of origin.

This study was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a survey to find out the impact on the management competencies of origin in Korea domestic export enterprises export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comprehension of the rules of origin, the higher the export performance of the enterprises. The simplification of the process of origin verification, the understanding of origin, the recognition of origin, the verification of origin, the simplification of origin verification, and the process of confirming country of origin hav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export performance of enterprises.

The reliability of the country of origin, the degree of control of the country of origin regulation, and the degree of utilization of the country of origin management system were low in relation to export performance.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export performance of companies, efforts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the rules of origin should be given priority.



## 제 1장 서론

한국은 FTA를 국가통상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적용시키기로 결정한 후 2004년 칠레와 최초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2016년 한·콜롬비아 FTA 까지 54개국 15건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한·중·일 FTA를 포함한 협상 진행 5건, 협상재개 여건 조성 4건 등 빠른 속도의 동시다발적 FTA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의 적극적인 FTA를 중심으로 한 대외무역정책은 높은 체결건수는 물론 대상국 측면에서도 EU,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자원부국, 신흥개도국 시장 등과의 전략적 차원의 FTA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sup>1)</sup>

이와 같이 FTA의 체결이 증대됨에 따라 FTA의 이행과정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사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sup>2)</sup> FTA에서 원산지규정은 역내 산 인정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지역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확보하고 역외 산 물품의 우회 수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원산지 규정은 상품의 시장접근과 자본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되며, FTA 협정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원산지 결정기준의 불명확성과 복잡성,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역할 및 중요성이 크다.

그러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미진·안경애(2011) 연구의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이해 및 인지도 현황에 관한 설문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의 원

1) 김학민 외 3명, 「대학 FTA강좌 참고교재」, KOTRA, 2016, p.94.

2) 조미진, 안경애,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와 국내기업의 FTA활용현황에 관한 분석”, 무역학회지, 36(3), 2011, p.23.

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특히, FTA가 체결되어 발효되고 있는 국가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수출기업이 72.3%, 수입기업은 58.4%나 되어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 또는 이해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 연구에서 국내 기업의 FTA 원산지규정의 활용 현황에 관한 설문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이미 체결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잘 모르고, 설사 알고 있더라도 그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FTA 체결로 인해 얻고자 했던 경제적 이득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도성·윤영호(2011)는 FTA 환경 하의 수출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원산지판정 능력 및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포함한 FTA 원산지활용역량이 높아질수록 수출성고가 높아진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무관세 시장접근을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과 수출확대를 위하여 FTA 원산지 증명과 이를 위한 기업들의 FTA원산지 활용역량 확보가 필수적임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 및 인식수준을 조사하여 이것이 수출성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나아가 한국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제고를 위한 원산지관리역량강화 필요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 제 2장 이론적 고찰

### 제 1절 원산지·원산지규정 및 원산지결정기준

#### 1. 원산지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있어서 특혜 무역협정(PTA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국가연합이나 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 포함)를 말한다.<sup>3)</sup> 따라서 원산지는 그 물품이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또는 국가,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지역, 국가를 의미한다.<sup>4)</sup>

#### 2.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ROO: Rules of Origin)이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로서 물품에 대한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국제적인 법규, 법령이나 규정 및 행정규칙을 말하며, 적용 목적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대별된다. 특혜원산지규정은 특정국가간 관세 상의 특혜를 주는 자유무역지대 또는 경제구역의 운영,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와 같은 특정국가군을 대상으로 한 관세특혜 부여 시 적용된다.<sup>5)</sup> 특혜원산지규정에서는 역내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만 낮은 관세가 허용되기 때문에 역외국의 역내국을 통한 우회수입방지가 주요 고려사항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 8852호] 제 2조 4항.

4) 김한성 외 3명,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p.28.

5) 김한성 외 3명(2008), 동상서, p.28.

이 되며, 회원국간 교역확대를 통한 무역창출효과 및 외국인투자 유입 등 상품의 시장접근과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무역정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원산지 인정규정이 엄격할수록 무역전환에 따른 부정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오며, 무역과 투자구조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sup>6)</sup> 비특혜원산지규정은 물품의 특혜관세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여타 무역정책상 상품의 원산지를 일반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특정국가로부터 특정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실시할 경우,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 등의 경우 원산지 식별은 물론 제소대상이 된 상품의 유사상품이나 국내산업의 존재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며, 단순히 정확한 무역통계나 수입신고서 작성을 위해 원산지규정의 적용을 요구하기도 한다.<sup>7)</sup>

FTA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원산지규정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므로 FTA의 경제적 이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며, 그 결과 원산지규정은 FTA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분야로 등장하게 되었다.<sup>8)</sup> FTA의 원산지규정은 역내 생산품이 FTA 특혜관세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통상 비특혜원산지규정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6) 정인교 외 3명,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연구 및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5, p.25.

7) 김한성 외 3명(2008), 전계서, p.28.

8) 한국무역협회, 「사례를 통해 배우는 FTA 원산지 길라잡이」, 2012, p.21.

### 3.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결정기준(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of origin)을 정하는 것은 원산지규정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표 1> 원산지결정기준의 종류

		완전생산기준			
일반적 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단독기준	세번변경기준	2단위 세번변경(CC) 4단위 세번변경(CTH) 6단위 세번변경(CTSH)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율 (RVC)	직접법(BU) 공제법(BD) 순원가법(NC)
				비원산지재료가치비율(MC)	
			특정공정기준	재단, 봉제, 날염, 염색 등	
		선택기준	“or 조건”		
		조합기준	“and 조건”		
		보충적기준	미소기준(de minimis)		
누적기준	재료누적				
	상품누적				
	공정누적				
중간재					
간접재료	공구, 금형, 설비, 연료, 촉매제 등				
재료가격	원산지재료의 가격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공구, 부속품 용기, 포장					
대체가능물품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불인정공정(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					
역외가공					

자료: <http://www.customs.go.kr>, 원산지결정기준.

이러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완전생산기준(a goods wholly obtained test),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



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실질변경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으로 이루어진다. 실질 변형의 판정은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method),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 or ad valorem percentage criterion), 특정공정기준(criterion of 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이 이용되는데, 각 기준의 특징 및 장·단점을 고려하여 보완·조합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실질변경기준의 특징과 장·단점을 정리하면 <표 2> 와 같다.



<표 2> 원산지결정기준의 특성 및 장·단점

기준	특징 및 장·단점	
세번변경 기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의 체계적인 품목표상의 관세분류 변경에 의한 방식</li> <li>• 생산품과 사용원재료에 적용되는 관세분류가 다를 경우 실질적변경이 있다고 인정</li> <li>• 관세분류의 변경이 실질적 변경 등에 있어서 결정적이지 않은 경우 및 추가적 조건을 결정하는 예외품 표를 통상적으로 수반</li> </ul>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결정을 위한 조건이 기계적이고 객관적이며, 예측가능함</li> <li>• 제조자가 변형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의 입증과 예측가능성이 높음</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분류에 맞추어 품목작성 곤란</li> <li>• 분류품목은 기술적 진보, 경제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수시로 최신의 것으로 경신할 필요가 있음</li> <li>• 수출입국 양쪽에서 동일한 품목표를 작성할 필요</li> </ul>
부가가치 기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비율에 의한 방식</li> <li>• 추가된 제조 또는 가공에 의한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실질적 변경이 있다고 인정</li> </ul>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이 정확하고 단순하여 협상시간 단축</li> <li>• 상업상의 기록 또는 서류 등에 의해 원산지의 입증 및 결정이 가능</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치의 경계선에 있을 경우 문제 발생</li> <li>• 원재료의 시장가격 및 환율의 변동에 의해 원산지 지위 좌우</li> <li>• 수출입국간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경우 기초가 되는 제조비나 총경비 등 요소 구성과 해석에 있어서 불일치가 나타날 가능성</li> <li>•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기업들에게 서류제출부담 및 이행비용이 있고 사후검증에 많은 행정비용 소요</li> </ul>
특정공정 기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작업 또는 가공작업표에 의한 방식</li> <li>• 충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조작업 또는 가공이 행해진 경우 실질적 변경이 있다고 인정</li> </ul>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결정을 위한 조건이 정확하고 객관적</li> <li>• 제조자가 변형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의 입증이 일반적으로 용이</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받는 가공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해야하고 또 작성이 곤란</li> <li>• 예외품의 표 작성이 곤란하고 동시에 기술적 진보, 경제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수시로 개정할 필요</li> </ul>

자료: 김한성 외 3명,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p.31을 토대로 제작성.

## 1) 원산지 보충 규정

실질변경기준별 단점을 보완하며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충기준이 사용되고 있는데,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rule) 또는 미소(용인)기준 (tolerance rule), 누적기준(cumulation rule), 롤업원칙(roll-up principle or absorption/takeover principle), 불인정공정(insufficient operation) 또는 최소 가공기준(minimal process), 부속품 및 예비부분품, 직접운송원칙(direct consignment), 대체가능물품(fungible goods) 등이 보편적이다.<sup>9)</sup>

### (1) 최소허용기준 또는 미소기준

비원산지의 재료 가격이 그 물품의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할 경우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번변경기준 등의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획일적 세번변경기준 적용에 따르는 모순과 불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기준이다. 원산지를 인정하는 최소허용기준 인정한도는 품목별, FTA별로 상이하다.<sup>10)</sup> 협정별 최소허용 기준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9) 김한성 외 3명(2008), 전계서, p.31.

10) 정인교 외 3명(2005), 전계서, p.68.

<표 3> 협정별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비교

구분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EFTA	미국
가격 기준	일반 품목	8%	10%	10%	10%	10%
	농수산물	1~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14류 적용제외/ 15~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중량 기준	섬유	8%	8%	10%	10%	7%
구분		인도	EU	페루	터키	콜롬비아
가격 기준	일반 품목	10%	10%	10%	10%	10%
	농수산물	1~14류 적용제외/ 15~24류 세번변경시 적용가능		1~14류 적용제외/ 15~24류 세번변경시 적용가능		1~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중량 기준	섬유	7%	8~30%	10%	8~30%	10%

자료: 한국무역협회, 「사례를 통해 배우는 FTA 원산지 길라잡이」, 2012, p.51를 토대로 재작성.

(2) 누적기준

누적기준은 비원산지 재료나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일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나 재료가 상대국의 물품에 포함되거나 결합되는 경우 그 물품이나 재료는 상대국이 원산지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누적기준에는 특혜를 받고자 하는 국가의 원산지 인증을 받지 못했으나 당해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당사국 중 한 국가에 원산지를 가지고 있는 재료에 대해 누적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양자간 FTA의 당사국들 사이에 적용되는 방식인 양자간 누적(bilateral cumulation), 상기의 누적기준

적용 시 단일의 특혜 영역으로 간주되는 복수국가 간 FTA에 적용되는 방식인 완전 누적(full cumulation), 당해 RTA의 당사국이 아닌 일정 국가들에 의해 공급된 재료가 일정 조건하에서 역내산으로 간주되는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이 있다.<sup>11)</sup>

### (3) 롤업원칙

롤업원칙은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한 가공요건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고 또 최종 제품에 사용되면 해당 재료는 100%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역내산 재료의 사용과 역내가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역외산 재료 수입과 역내 가공을 통해 생산된 중간부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여기에 투입된 역내 부품과 부가가치도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방식을 롤다운(roll-down)원칙이라 한다.<sup>12)</sup>

### (4) 불인정공정기준

최소공정기준, 불충분가공기준이라고도 한다. 해당 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역내에서 수행된 공정이 단순·경미한 공정일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기준을 말하며,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면 별도의 리스트로 규정하는데 이는 우회수입 또는 관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기준이다.<sup>13)</sup>

### (5)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 등과 포장재료의 원산지 결정

한국이 기체결한 FTA는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 등이 본제품과 같이 수입되어 판매되며 그 수량 및 종류가 공구로 인정되면 본 제품의 원산지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속품 등을 별도 수입하거나 통상 인정되는 수량보다

11) 김한성 외 3명(2008), 전게서, p.80.

12) 김한성 외 3명(2008), 동상서, p.81.

13) 김한성 외 3명(2008), 동상서, p.82.

많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sup>14)</sup> 한-아세안 FTA의 경우 품목에 관계없이 부속품 등을 제외하고 본체의 원산지를 결정하여 가장 폭 넓게 인정하고 있고,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 한-인도,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비원산지 부속품 등의 세번변경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는 각각의 원산지별로 재료비에 계상한다. 반대로 한-EFTA, 한-EU, 한-터키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비원산지 부속품 등의 세번변경 여부를 고려하고,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는 각각의 원산지별로 재료비에 계상한다. 협정별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의 원산지결정을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표 4> 협정별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 원산지결정 비교**

구분	칠레/싱가포르/아세안/미국/인도/페루/콜롬비아	EFTA/EU/터키
세번변경요건	비고려	고려
부가가치요건	원산지별 계상	

자료: 한국무역협회, 「사례를 통해 배우는 FTA 원산지 길라잡이」, 2012, p.71을 토대로 제작성.

사진기나 악기, 목걸이 케이스 등 본체를 구성하지 않는 소매용 포장·용기의 경우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미국, 한-인도,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의 경우 세번변경기준 적용 시 소매용 포장·용기의 세번변경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며,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원산지별로 계상한다. 한-EFTA, 한-EU, 한-터키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 적용 시 소매용 포장·용기를 세번변경 여부 검토 시 고려하며,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에는 원산지별로 계상한다. 컨테이너와 같은 상품수송을 위한 포장·용기는 그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다. 협정별 소매용·수송용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14) 김한성 외 3명(2008), 전거서, p.84.

<표 5> 협정별 소매용·수송용 포장재료 및 용기 원산지결정 비교

구분		칠레/싱가포르/아세안/미국/인도/페루/콜롬비아	EFTA/EU/터키
소매용	세번변경요건	비고려	고려
포장·용기	부가가치요건	원산지별 계상	
수송용 포장·용기		비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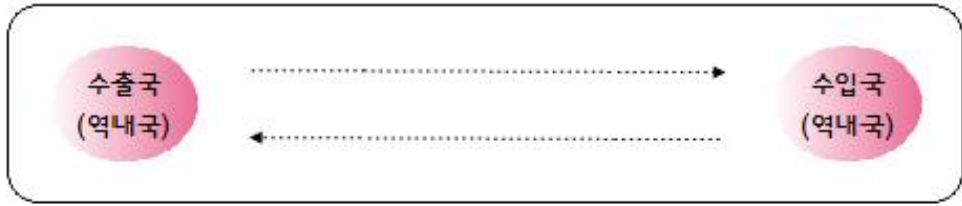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사례를 통해 배우는 FTA 원산지 길라잡이」, 2012, p.75를 토대로 제작성.

(6) 직접운송원칙

원산지 인정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더라도 운송도중 제 3국을 거치지 않고 원산지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운송 된 경우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원칙을 말한다. 하지만 운송 상 목적에 의해 제 3국에서 환적 된 경우 원산지는 인정되지만, 운송에 필요한 경미한 작업 외에는 다른 작업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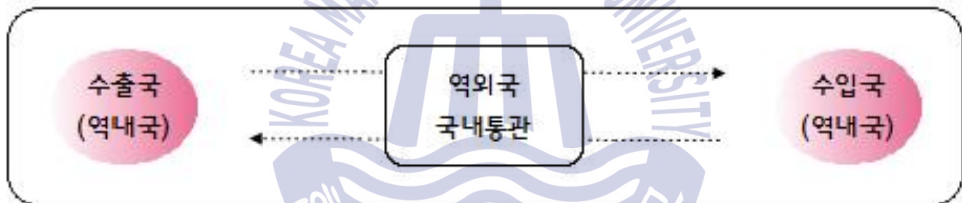
15) 정인교 외 3명(2005), 전게서, p.76.



■ 역내 수출국에서 역내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 FTA 특혜적용



■ 역외국을 단순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 FTA 특혜적용



■ 역외국에서 수입, 추가가공 등을 거친 경우 FTA 특혜 비적용

자료: 한국무역협회, 「사례를 통해 배우는 FTA 원산지 길라잡이」, 2012, p.42.

### <그림 1> 직접운송원칙 적용사례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경우, 세관은 수출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를 수입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다. 수출국에서 출발한 물품이 제 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제 3국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되었을 뿐, 추가가공을 거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 제 3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입자에



게 요구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7) 대체가능물품(fungible goods)

상업적으로 호환가능하고 특성이 동일한 상품을 실제로 동일한 물품으로 간주하여 원산지/비원산지를 결정하게 하는 특례로 곡물, 과일, 석탄, 볼트, 타이어 등이 포함된다. 원산지 결정 목적상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은 물리적·회계적으로 구분·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리적으로 구분해서 보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재고관리기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sup>16)</sup> 개별법은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선입선출법은 생산자가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취득한 후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나 가격 등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인 반면, 후입선출법은 가장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나 가격 등을 기준으로 결장하는 방법이다. 평균법은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관리기법이 일단 결정되면, 그 기법은 회계연도 동안 계속 사용되어야 한다.<sup>17)</sup> 협정별 대체가능물품의 적용범위를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표 6> 협정별 대체가능물품 적용범위 비교

구분	칠레/싱가포르/미국/페루/콜롬비아	아세안/EFTA/인도/EU/터키
적용범위	제품, 상품, 재료	재료

자료: 한국무역협회, 「사례를 통해 배우는 FTA 원산지 길라잡이」 2012., p.60를 토대로 재작성.

- ※ 대체가능물품 관련하여 “상품”은 완성된 “제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됨.
- ※ 대체가능물품 규정은 크게 미국계(미국, 칠레, 페루, 콜롬비아, 싱가포르)과 EU계(EU, EFTA, 터키, 인도, 아세안)으로 구분됨.

16) <http://www.kita.net> , 무역용어.  
 17) 한국무역협회(2012), 전게서, p.60.

## 2) 원산지 인정 특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 원칙과 보충적 결정기준 외에도 상대국의 지형·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원산지특례조항이 도입되었는데, 역외가공 인정(outward processing), 재수입물품, 개성공업지구 생산품이 있다.<sup>18)</sup>

### (1) 역외가공 인정제도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 overseas processing)이란, 두 개의 국가가 FTA를 체결한 경우, 체결 당사국내에서 반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제 3국에서 가공하고 다시 역내로 재수입하여 최종제품을 만들어 상대 체결당사국에 수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역외가공 인정 시, 역외가공을 거쳐 재수입된 물품의 생산 초기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국내부가가치로 인정하게 된다. FTA 체결 시 역외가공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지만, 국토면적이 매우 협소하여 초기 단계부터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산시설이 한 국가 내에 존재할 수 없는 경우나 최종제품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원재료 및 반제품이 지역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사이에서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는 경우에 역외가공을 인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역외가공의 인정은 FTA 체결 당사국이 아닌 다른 인접국가에게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MFN(최혜국대우)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악용한 우회수입의 유발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 검증 작업이 매우 까다롭다.<sup>19)</sup> 협정별 역외가공 인정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8) 김한성 외 3명(2008), 전계서, p.86.

19)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FTA 원산지규정의 '역외가공' 조항」, 2005, p.1.

<표 7> 협정별 역외가공 인정제도 비교

구분	역외가공 허용여부	주요내용
한-칠레	불인정	-
한-싱가포르	일부 인정	개성공단 생산품목의 경우 ISI <sup>20)</sup> 방식 4,625개(HS 6단위)/역외가공방식 134개(HS 10단위)
한-아세안	일부 인정	개성공단 생산품목 아세안 국가별 100품목
한-EFTA	일부 인정	품목의 제한 없이 적용하는 일반 역외가공과 특정 품목(267개) 역외가공 인정
한-미 한-EU 한-터키	미정	협정 발효 1년 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통해 역외가공 가능성 존재
한-인도	일부 인정	개성공단 생산품목 일부인정(HS 6단위 기준 의류제품 등 108개 품목)
한-페루 한-콜롬비아	일부 인정	개성공단 생산품목 일부인정(HS 6단위 기준 의류제품 등 100개 품목)

자료: 한국무역협회, 「사례를 통해 배우는 FTA 원산지 길라잡이」, 2012, p.31을 토대로 제작성.

## (2) 재수입물품

비당사국으로 수출되었다가 원상태로 재수입된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그대로 인정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말한다.<sup>4)</sup> 역외가공조항과 유사하나 차이점은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수입되거나 수출기간 동안 보존에 필요한 작업 이외의 아무런 가공을 거치지 않은 물품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혜관세 적용대상 물품의 범위를 국경에 고정시키지 않고 탄력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역내에서 실질적으로 생산된 물품의 교역을 촉진시킨다는 장점이 있으나, 세관의 행정부담 증가와 함께 관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sup>21)</sup>

20) ISI(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방식: 양국 간 실제 원산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대국에서 수출되는 일정제품에 대해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방식.

21) 정인교 외 3명(2005), 전게서, p.83.

## 제 2절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원산지규정이행에 있어 절차 간소화를 통한 통관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우회수입방지 등의 목적으로 수출국에서 수출 전에 이루어지는 원산지증명과 수입국에서 수입 후에 이루어지는 원산지검증이 있다.

### 1. 원산지 증명

원산지 증명은 수출 전에 수출국가에서 FTA 특혜무역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때 수출 또는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주는 문서인 원산지 증명서는 해당 물품이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문서이다.<sup>22)</sup>

#### 1) 원산지증명방식의 종류

원산지 증명방식은 정해진 기관에서 발행하는 기관발급,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행하는 자율발급, 사전에 세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수출자만 자율 발행하는 절충식 발급으로 구분된다.<sup>23)</sup> 자율발급은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 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한·칠레, 한·EFTA, 한·페루, 한·터키 협정에 적용되며, 기관발급은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로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협정에 적용된다.

22) 손관도·정성엽, “FTA 관세혜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중소기업의 원산지정보 관리 전략”,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28(2), 2015, p.19.

23) 김학민 외 3명(2016), 전게서, p.350.

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터키	미국
발급방식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기관 (치즈)	기관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기관/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발급자	수출자	*싱가포르(세관) *한국(세관, 상의, 자유무역관리원)	수출자	아세안(정부기관)한국(세관, 상의)	인도(수출검사위원회)한국(세관, 상의)	6천유로미상인증수출자	*기관발급 *자율발급	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증명서식	통일증명서식	별도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AK)	통일서식	송품장	통일서식	송품장	자율(권고서식)
유효기간	2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4년
사용언어	영어					한글, EU당사국언어	영어		영어, 한글
사용횟수	1회 사용원칙								12개월 내에 포괄발급 가능

구분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발급방식	자율/기관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발급자	*수출자/생산자 *호주(상공회의소, 산업협회)	수출자/생산자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세관/상의)	*한국(세관/상의) *베트남(산업무역부)	수출자/생산자
증명서식	자율(권고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송품장/권고서식
유효기간	2년	2년	1년	1년	2년

자료: <http://www.customs.go.kr>

### <그림 2>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절충식 발급은 일정규모 이상의 금액을 빈번하게 수출하는 수출자 중 성실업자에 대해 수출국 세관당국의 사후관리를 조건으로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렇지 않은 수출자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당국에 신청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이다.<sup>24)</sup> FTA 협정별 원산지 증명서 발급자 및 증명서식을 비교하면 <그림 2>와 같다.

24) 정인교 외 3명(2005), 전게서, p.86.

## 2) 원산지증명방식의 비교

어떤 원산지증명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각국의 행정관행 및 관련제도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인 원산지증명방식의 특징 및 장·단점은 <표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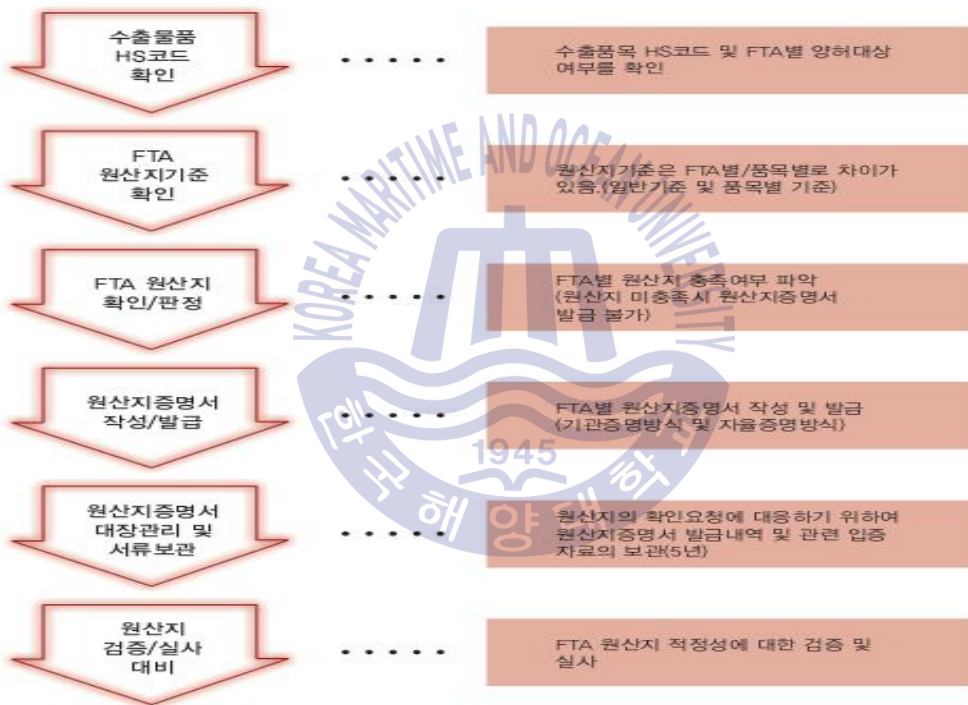
<표 8> 원산지증명방식의 특성 및 장·단점

	기관발급	자율발급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의 수출신고 완료 후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신청</li> <li>• 원산지증명서 양식(별도 구매)</li> <li>• 원산지증명서 구매 비용 및 각종 서류준비 비용 등 소요</li> <li>• 동일 물품도 반복발급 및 수수료 지급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절차 불필요</li> <li>• 원산지증명서 양식(별도 구매 불필요)</li> <li>• 별도 비용 불필요</li> <li>• 별도 절차 불필요</li> </ul>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신력이 높아 우회수입방지 기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급절차 신속·편리</li> <li>• 증명서 발급비용 절감</li> <li>• 통관절차 간소화</li> <li>• 무역원활화</li> <li>• 계약당사간 자율책임 가능(수입자와 수출자가 공동책임)</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신고와 증명서 발급절차 중복(이중규제)</li> <li>• 발급절차 복잡</li> <li>• 물류비용증가</li> <li>• 수출통관 지체</li> <li>• 세관의 원산지확인기능 약화로 우회수입에 대한 효율적 대처 곤란</li> <li>• 발급기관의 증명서 발급 실수시 책임 추궁이 곤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증명 가능성</li> <li>• 보완방안(FTA 관세특례법): 원산지입증책임제, 원산지실사검증제, 원산지사전검증제 등의 도입 및 허위증명자 처벌강화</li> </ul>

자료: 방호경(2004) 「FTA 원산지 규정의 주요 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정책자료 04-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p.47를 토대로 제작성.

### 3)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Certificate of Origin(원산지증명서), Origin Declaration(원산지신고서), Back to Back Certificate of Origin(연결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종류별로 적용국가가 상이하다. FTA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절차도는 다음과 같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사례를 통해 배우는 FTA 원산지 길라잡이」, 2012, p.13.

<그림 3>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절차도

FTA 체결국일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해당 수출물품이 각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류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위의 절차대로 원산지기준별 원산지 판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원산지 판정결과 원산지가 입증되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데, 기관발급일 경우 신청자는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고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서류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선적 전 신청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출물품 선적 이후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 신청자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한다. 자율발급일 경우 기관발급의 신청자 의무사항과 동일하지만, 기관이 일정수준의 사전점검을 마친 기관발급보다 실사대비 측면에서 더 신중하게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표 9> 원산지증명서 서류보관

구분	수출자/생산자		수입자	
	기산일	보관기간	기산일	보관기간
한-아세안	C/O 발급일	3년	수입일자	5년
한- 칠레, 미국, 인도, 페루, 콜롬비아	C/O 발급일	5년	수입일자	5년
한- EFTA, EU, 터키	-	5년	수입일자	5년
FTA 특례법	수출신고수리일	5년	수입일자	5년
	원산지증명서 작성일	5년	수입신고수리일	5년

자료: 한국무역협회, 「사례를 통해 배우는 FTA 원산지 길라잡이」, 2012, p.113.

원산지 사후검증 및 실사에 대비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의 대장관리 및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인하고, 형사처벌을 병행하며, 인증수출자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 4)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제도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모든 협정, 모든 품목에 대해 혜택을 주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인증 받은 협정별, HS 6단위에 혜택을 주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있으며 본부세관 및 평택 직할세관의 인증에 따라 5년의 인증유효기간을 가진다. 개정 인증수출자 제도<sup>25)</sup>에 따르면 원산지 증명능력을 보유(전산시스템 보유)하고 C/O 작성대장을 비치·관리 및 원산지전담관리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속임수와 부정에 의한 C/O 미발급자를 요건으로 두고 있다.

〈표 10〉 협정별 인증수출자 혜택

협정	인증 前	인증 後
한-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li> </ul>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작성 (전산으로 신청)</li> <li>• 첨부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신고필증 사본</li> <li>-원산지소명서</li> <li>-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li> <li>-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li> </ul> </li> <li>• 현지확인(필요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전산으로 신청)</li> <li>• 첨부서류 제출 생략</li> <li>• 현지확인 생략 가능</li> </ul>
한-E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수출자의 서명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수출자의 서명 생략</li> </ul>
한-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화 2,000달러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화 2,000달러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모두 가능</li> </ul>
기타	동 제도 미적용	

자료: <http://www.customs.go.kr>

## 2. 원산지 검증

원산지 검증은 수입 후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 및 수입된 상품의 특혜 원산지 규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입국가의 요청에 의해 이행되는 단계로서, FTA에서의 원산지 검증이란 수입 당사국에 통관된 수입물품이 특혜관세의 수혜요건(원산지규정의 충족, 증빙서류의 유지관리, 직접운송원칙 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FTA 협정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고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입방지를 통한 국내 산업보호, 관세탈루방지, 협정국간 교역과 투자촉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효율적인 FTA 이행관리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sup>26)</sup>

### 1) 원산지 검증방식의 종류

일반적으로 원산지 검증 시에는 거래당사자요건, 양허품목 및 세율검사, 일반 기준, 품목별기준, 운송요건, 원산지증명 요건을 확인하게 되는데, 검증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직접검증, 간접검증, 간접/직접 검증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 검증이란<sup>27)</sup>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계약상대국의 검증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검증은 관세당국이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원산지검증을 의뢰(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검증에 입회 또는 참관하는 것 포함)하여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직접 검증은 검증 수행시, 계약 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검증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先간접검증-後직접검증 이라고도 한다.<sup>28)</sup> 이러한 검증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표 11>과 같다.

25) '11.6.30 개정.

26) 김학민 외 3명(2016), 전거서, p.368.

27) 직접검증방식을 채택한 FTA 검증절차는 서면조사와 현지방문조사로 크게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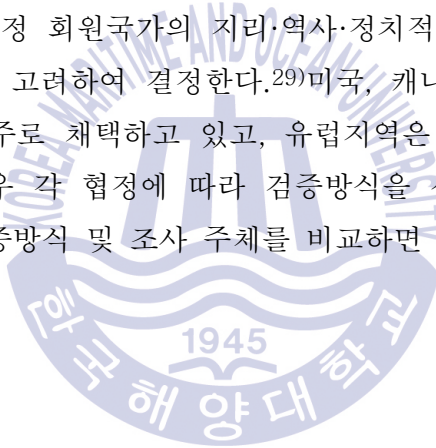
28) <http://www.ftahub.go.kr>, 협정별 검증방법.

〈표 11〉 원산지 검증방식의 장·단점

구분	직접검증	간접검증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주권 확보</li> <li>• 국내산업 보호</li> <li>• 관세탈루 및 우회수입 방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검증 효율성</li> <li>• 비용절감</li> <li>• 자국 수출자 관리 용이</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증비용</li> <li>• 현장검증의 기술적 어려움 (언어, 회계처리, 현지정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국세관에 의존</li> <li>• 행정협조 실패 가능성 (관세손실, 행정부담 및 우회 수입 증가)</li> </ul>

자료: 남풍우, “자유무역협정(FTA)하에서 원산지검증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11(3), 2010, p.143 토대로 작성.

이러한 검증방식은 협정 회원국가의 지리·역사·정치적 상황과 관세제도, 검증 효율성, 검증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sup>29)</sup> 미국, 캐나다, 칠레 등 미주권 국가는 직접검증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고, 유럽지역은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각 협정에 따라 검증방식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sup>30)</sup> FTA 협정별 검증방식 및 조사 주체를 비교하면 <표 12>와 같다.



29) 김석오,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KIEP 전문가 간담회, 2006; 김한성 외 3명(2008), 전계서, p.40. 재인용.

30) 남풍우(2010), 전계논문, p.143.

<표 12> 협정별 원산지 검증방식 비교

구분	검증 방식	조사 주체
한-칠레/싱가포르/페루/뉴질랜드	직접검증	수입국세관
한-EFTA/EU	간접검증	수출국세관 (수입국 참관 가능)
한-ASEAN/인도/베트남	先간접검증 後직접검증	先수출국세관 後수입국세관
한-미국	직접검증(섬유, 의류는 간접·공동검증) <sup>31)</sup>	수입국세관(섬유, 의류 수출국 세관)
한-터키/캐나다	간접검증	수출국세관
한-호주	직접검증 (간접검증 병행)	수입국세관(간접검증인 경우 수출국세관)
한-콜롬비아	직접검증 및 간접검증	수입국세관 및 수출국세관
한-중국	원칙: 간접검증 예외: 직접검증	간접: 수출국세관 직접: 수입국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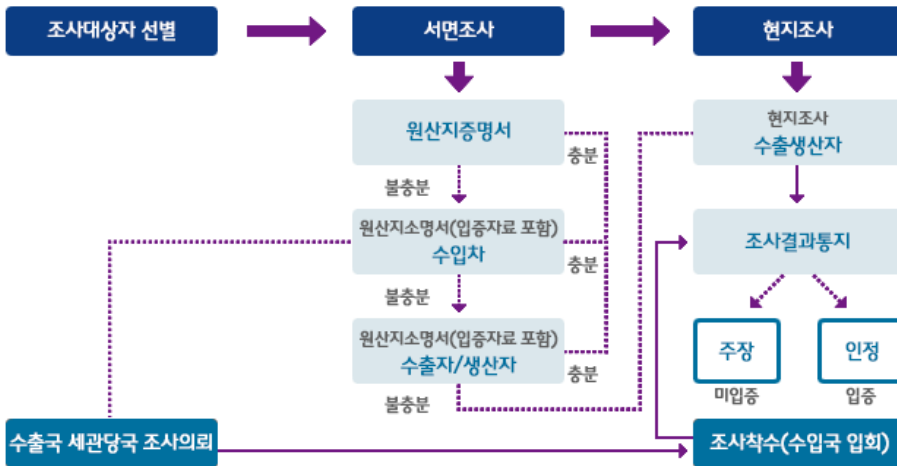
자료: <http://www.ftahub.go.kr>, 협정별 검증방법 토대로 제작성.

## 2) 원산지 검증절차

수입국은 사후검증을 위해 수입자나 수출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증빙자료 요청과 서면질의서를 통보하고, 통보받은 수출자나 생산자는 일정 기간 안에 이에 대한 회신을 해야 한다. 기간 안에 요청한 정보 및 답변에 회신하지 못한 경우, 혹은 정보와 답변이 허위로 기재되거나 미흡한 경우 수입국은 해당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 서면 조사 단계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수입당사국이 직접 당사국의 수출자나 생산자의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sup>32)</sup>

31)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수출국의 관세당국과 함께 수출국의 수출자나 생산자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입국의 관세당국과 수출국의 관세당국이 함께 원산지 검증을 하는 방식.

32) 김한성 외 3명(2008), 전계서, p.117.



자료: <http://www.ftahub.go.kr>, 원산지 검증 절차.

<그림 4> 원산지 직접검증 절차도

간접검증의 경우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 검증은 수출국 세관당국이 수행한다. 수출국 세관당국은 10개월 이내에 검증 결과를 수입국 세관당국에 회신해야하며, 그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거나 회신내용이 불충분한 때에는 수입자가 신고한 원산지를 불인정하고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sup>33)</sup>



자료: <http://www.ftahub.go.kr>, 원산지 검증 절차.

<그림 5> 원산지 간접검증 절차도

33) 정인교 외(2005), 전거서, p.90

### 3) 원산지 검증의 목적

원산지 검증의 목적은 각 협정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입국 세관당국이 특혜관세적용을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① 서류의 진정성 ② 원산성(原産性)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③ 원산지증명서 문언의 정확성 ④ 원산지규칙의 일반적 규정 준수 여부 ⑤ 특혜우대적용의 여부 ⑥ 기타 필요사항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재료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sup>34)</sup>

## 제 3절 원산지정보 유통·관리

원산지정보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협정 및 관세·무역법령에 따라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확인·조사 또는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sup>35)</sup> 이러한 정보에는 특혜대상 물품 그 자체에 대한 정보와 동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원산지·품목정보·원가정보·거래정보가 포함된다.<sup>36)</sup>

### 1. 원산지정보 유통

#### 1)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

34) 남풍우(2010), 전개논문, p.146.

35)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정보의 품질평가 및 원산지 검증대상 선별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정의).

36) 박철구, “원산지정보의 유통 촉진방안에 관한 실증연구(중소기업 FTA 활용촉진 지원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52.

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고의 원산지 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 가능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사용한다. 수출업체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나 부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업체가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재료가 국내산인지 역외산인지 판단하여 작성하는데,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절차를 마련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원산지증명 절차를 신속히 하는 데에 그 필요성이 있다.

## 2) 원산지정보 유통 경로

FTA 특혜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는 국내 조달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물품의 공급자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입수가 필수적이다. 국내 거래단계에서의 원산지정보 관리는 각 거래단계별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과 유통이 제약 없이 원활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때 발급·유통되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내용 역시 오류가 없어야 한다.<sup>37)</sup>



자료: <http://www.customs.go.kr>, 유통경로.

<그림 6> 원산지정보 유통경로(국내거래단계)

37) 진병진, “FTA 원산지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18(2), 2016, p.110.

수출자는 공급받은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의 원산지 생산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요청하게 되고,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바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한다. 요청받은 생산자는 해당 FTA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 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발급해야한다.<sup>38)</sup>

## 2. 원산지정보관리

### 1) 원산지정보관리의 의의

원산지정보관리는 FTA 원산지 판정을 지원해 주는 원산지결정기준의 DB를 제공해주며, 협정별 상이한 결정기준에 의해 복잡한 원산지의 판정·관리에 있어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용이하다.<sup>39)</sup> 유통되는 국내거래단계 원산지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도로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국내공급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유통·발급되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에 따른 부담완화와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제 3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 및 정확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로 2013년부터 관세청 및 FTA무역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일부 운영되고 있다. 그 밖에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관세사를 통해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거나 원산지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sup>40)</sup>

### 2) 원산지정보관리시스템

원산지정보관리시스템이란 기업의 일반 업무처리에서 추출한 원산지에 관련된 정보(구매, 원가, 판매 등)를 활용하여 일련의 FTA 원산지업무 처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여 최종 수출업체인 경우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부품공급업체인 경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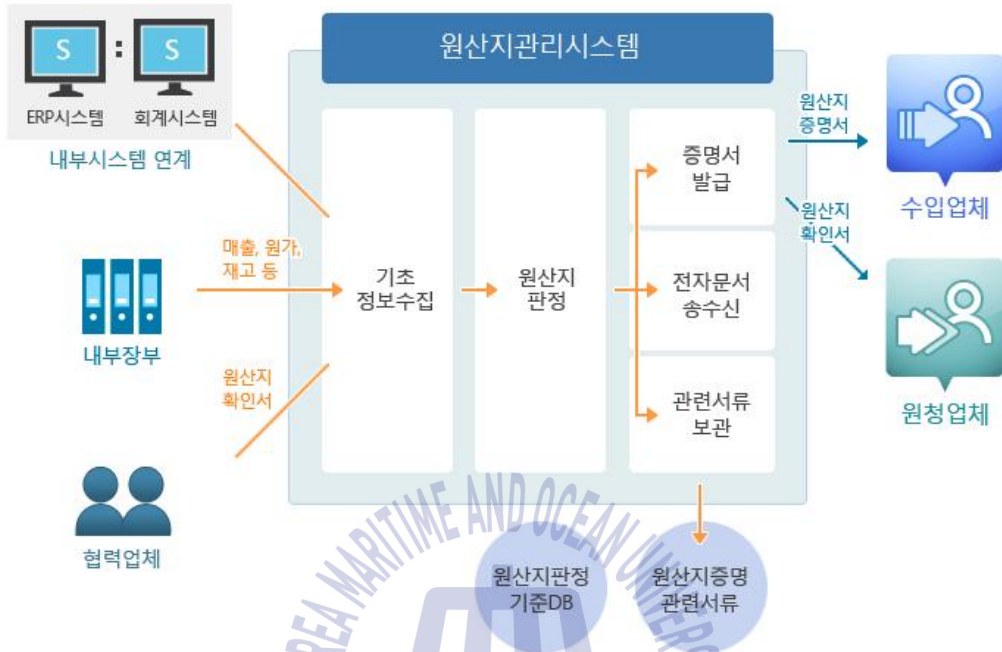
38) <http://www.customs.go.kr>, 관세청.

39) 이나래, “원산지정보관리 역량요인이 기업의 원산지제도 활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p.25.

40) 진병진(2016), 전개논문, p.112.



는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자료: <http://okfta.kita.net>, 원산지관리시스템.

<그림 7>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성도

원산지정보관리시스템은 FTA 원산지판정을 지원해주는 원산지결정기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며, 수출물품(제조물품)의 BOM(재료명세서), 원재료 및 수출물품(제조물품)의 재고, 국내외 원재료의 거래 정보 및 원산지 관련 정보와 같은 원산지 판정을 위한 기초 정보를 관리한다. 또한 FTA 협정별·제품별 원산지를 판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및 소명서의 출력과 관련 문서를 저장 관리하는 등의 기능이 있다. 이처럼 복잡한 원산지판정·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과 사후검증을 대비한 관련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를 제공하며 FTA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산지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sup>41)</sup>

〈표 13〉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현황

개발자		원산지관리시스템
정부(관세청)		FTA-PASS
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OCS
	삼정KPMG	K-Origin
	딜로이트 안진	Benit
	The ITC	GTS
관세법인	에이인 관세법인	FTA-HUB
	이정 관세법인	OTS
	CTL 관세법인	
ERP 기업	SAP	GTS
	인텔/오라클/에코/클라우드/SK 텔레콤	FTA Insight
	영림원소프트랩/LG히다찌	K-FTA
IT 기업	KTNET	FTA Korea
	비즈머스	Wise FTA
	엠로(EMRO)	FTA 원산지정보관리시스템
	레디코리아	FTA OMS
	매트릭스투비	Matrix-FTA
	엠투엠글로벌	M2M-FTA
	비즈리더그룹	OASIS
	유비포럼	
	국제원산지정보원/클레이웍스	FTA-HUB/K-POP
KS 솔루션	원산지관리 솔루션	

자료: 진병진(2016), “FTA 원산지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118.

## 제 4절 선행연구

### 1. 원산지규정 관련 선행연구

이상진 외(2009)는 원산지규정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 및 교육지원과 원산지 검증 방법의 단일화 추진과 원산지증명 글로벌표준화를 통한 간소화 방안과 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제가 선행되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서류의 간소화와 증명

41) <http://okfta.kita.net>, FTA종합지원센터.

서 발급의 시간 및 비용부담을 줄이고 FTA 협정의 원산지규정을 활용하여 수출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sup>42)</sup>

조미진·안경애(2011)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업의 이해와 관심이 매우 저조하여 기업의 생산 및 교역구조에 기초한 원산지규정에 대한 거시적인 목표와 방향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업계의 의견을 협정내용에 반영하려는 보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중소형 규모의 기업을 위한 맞춤 설명회, 교육 과정 및 컨설팅 기회제공과 기체결 FTA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노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sup>43)</sup>

박명섭 외(2014)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주요 FTA를 대상으로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일관성 부재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FTA를 기준 FTA로 두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FTA별 수평적 비교를 통해 일관성 지수(CI)를 구축하여, FTA와 산업 간의 차이를 객관화된 지표를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하여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이 갖는 역할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볼 때 FTA별 '일관성유지'가 중요함에도 각 원산지규정의 차이로 인한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sup>44)</sup>

## 2. 원산지증명·검증제도 관련 선행연구

김창봉·박주원(2010)은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 제도의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원활한 무역업무수행을 위한 현행 원산지증명의 개선으로 효율화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위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및 원산지증명을 위한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원산지 확인절차의 신뢰성 제고와 효율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임을 지적하며 효율화방안을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였다.<sup>45)</sup>

42) 이상진·김무한·김형철, "FTA 원산지규정 분석과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10(3), 2009.

43) 조미진·안경애(2011), 전개논문.

44) 박명섭·조미진·이병문, "한국 FTA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일관성 분석",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39(4), 2014.

45) 김창봉·박주원, "원산지증명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11(1),

남풍우(2010)는 원산지검증제도와 그 활용에 있어 기업들의 개별 대응이 어려운 만큼 관세청에서 집중검증이 예상되는 산업을 선별하여 집중관리 및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표준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기업에서는 회사 자체적인 원산지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한 입증자료의 관리와 원산지 검증 협력 의무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며, 원산지 사전심사제도와 인증수출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sup>46)</sup>

### 3. 원산지정보 관련 선행연구

김창봉·이나래(2014)는 기업의 FTA 인지가 강화될수록 원산지정보관리 역량과 원산지정보관리 성과가 개선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며, 기업이 복잡한 원산지의 증명과 검증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FTA와 관련된 제도를 인지하여 FTA 체결국별 원산지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증명서류를 준비함으로써 수출·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원산지정보관리 역량과 원산지정보관리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sup>47)</sup>

손관도·정성엽(2015)은 중소기업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분석하여 앞으로 관세혜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원산지정보관리 전략을 모색하며, 기업 스스로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FTA활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분야에 재직하는 직원의 실무능력보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원산지 관리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영세기업의 지원과 원산지관리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통하여 고용창출의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48)</sup>

진병진(2016)은 기업들의 원활한 FTA 활용 지원을 위해 국내적 영역에서의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FTA관세특별법 상에 발급 장려규정

---

2010.

46) 남풍우(2010), 전제논문.

47) 김창봉·이나래,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의 원산지정보관리 요인들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15(4), 2014.

48) 손관도·정성엽(2015), 전제논문.

의 신설과 협력사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주장하였고, 오류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최종 수출자의 의도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한 손실방지책의 도입필요성과 그 방안으로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무역보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sup>49)</sup>

#### 4. 원산지관리역량 및 원산지 활용성과 관련 선행연구

박철구·최장우(2013)는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역량 및 원산지정보의 유통체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원산지관리역량 강화 및 원산지정보의 유통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의 도출을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유도,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촉진, 민간 컨설팅시장의 육성 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sup>50)</sup>

김창봉·임덕환(2011)은 고객의 국가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에 의하여 원산지표시에 의한 차별화된 구매활동이 기업의 원산지제도 활용성과에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을 도출하며 기업의 원산지 제도를 활용하는 수준정도는 원산지제도의 복잡성, 관리수준, 대응전략 등의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하였다.<sup>51)</sup>

김창봉·권승하(2015)는 글로벌 공급체인망 통합으로 원산지의 중요성이 향상되면서 기업들이 원산지 검증 및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 제도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원산지정보 신뢰성과 원산지 관리역량 강화 및 원산지국가 이미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 원산지 국가 브랜드 가치는 원산지제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원산지 제도 성과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2)</sup>

---

49) 진병진(2016), 전개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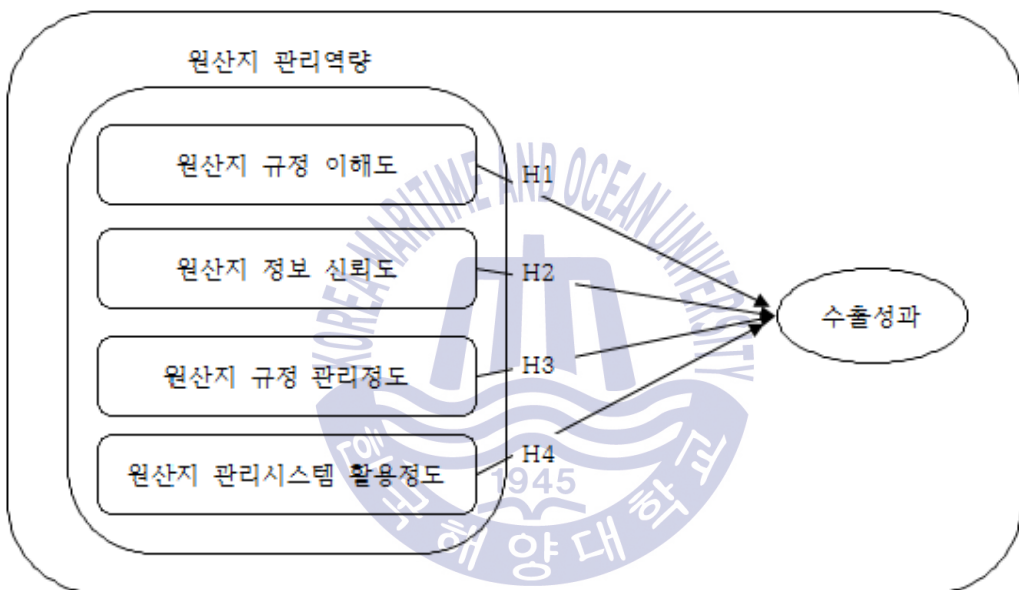
50) 박철구·최장우, “원산지관리역량 및 FTA 활용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14(1), 2013.

51) 김창봉·임덕환, “원산지제도의 복잡성, 관리수준, 대응전략과 원산지제도 활용성과의 관계 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12(2), 2011.

52) 김창봉·권승하,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의 원산지 요인이 원산지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원산지 이미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2015.

## 제 3장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 제 1절 연구모형



<그림 8>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관리역량에 대해 원산지 규정 이해도 · 원산지정보 신뢰도 · 원산지 규정 관리정도 ·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정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이것이 한국 수출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그림 8>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 제 2절 연구가설

### 1. 원산지 규정 이해도

성윤갑(2005)은 FTA원산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FTA협정별 원산지 기준을 검토하여 원산지자격 여부를 판정하는 한편,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원산지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하기에 이르기까지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요구된다고 하였다.<sup>53)</sup>

김무한(2010)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다수가 아직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잡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높다고 지적하였다.<sup>54)</sup>

조미진·안경애(2011)는 FTA 발효 국에 대한 수출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수출기업의 FTA특혜관세 신청경험이 없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이용방법을 몰라서(38%)’ 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받았다. 기타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작성이 어렵다고 응답한 업체에게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설문한 결과, 주로 원산지규정에 관한 내용 및 용어가 어렵다는 의견과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며 작성절차가 어렵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원산지관리역량이 높을수록 수출성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원산지 규정 이해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수출성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53) 성윤갑, “한국의 원산지표시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세학회지, 2005.; 나도성·윤영호, “FTA환경 하의 수출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36(3), 2011, p.36 재인용.

54) 김무한,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2010; 김창봉·이나래,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의 원산지정보관리 요인들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국제 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15(4), 2014, p.286 재인용.

## 2. 원산지 정보 신뢰도

이태영 등(2011)의 연구는 기업이 생산하는 원산지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지 여부가 기업의 원산지 관리역량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sup>55)</sup>

박철구·최장우(2013)는 원산지관리역량 및 FTA 활용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상대기업에 제공하는 원산지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정도, 상대기업이 제공한 원산지정보의 비밀유지에 대한 신뢰정도가 기업의 원산지 관리역량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김창봉·권승하(2015)는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의 원산지 요인이 원산지성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원산지 이미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에서 원산지정보의 신뢰성을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내용에 대한 신뢰성 확보, 원산지정보(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자 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의 신뢰성 확보, 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을 공인기관에 확인하여 신뢰성 확보, 완제품에 대한 부품의 원산지확인서 확보 등으로 측정하였다.

이태영(2011)의 연구는 기업이 생산하는 원산지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박철구·최장우의 연구에서도 업체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내용의 정확도 정도, 원산지 증명서류의 신뢰성 확보가 원산지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 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원산지관리역량이 높을수록 수출성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55) 이태영 외 5명,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을 위한 선진사례 수집·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국제원산지정보원, 2011; 박철구·최장우, “원산지관리역량 및 FTA 활용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14(1), 2013, p.77 재인용.



가설 2: 원산지 정보 신뢰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수출성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 3. 원산지 규정 관리정도

Kawai and Wignaraja(2009)는 원산지규정 도입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수출 지역이 다양화되고 있어서 복잡한 원산지규정에 대한 비용 부담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전문가 확보와 정보화시스템을 확보하여 원산지제도에 대한 차별화된 대응과 기업 내 체제를 바탕으로 기업 내 원산지관리체계 구축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실행의 중요성에 대해 연구하였다.<sup>56)</sup>

손판도·정성엽(2015)은 FTA 관세혜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중소기업의 원산지정보 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조사에 관한 결론을 언급하며 중소기업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이유로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정보가 약함을 들었다. 또한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를 갖춘 전문 인력이 없으면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없으며 사후검증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sup>57)</sup>

김창봉·임덕환(2011)은 원산지제도의 관리수준이 원산지제도의 대응전략과 활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 확보수준, 정보화수준, 선별검사의 관리수준의 세 가지 변수로 측정하였다.

박철구·최장우(2013)는 김한성 등(2008), 정인교 등(2010), 이태영(2011)의 연구에서 정부나 민간단체를 통해 기업의 원산지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의 지원 정도가 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점을 언

56) Kawai and Wignaraja, "Asian FTAs: Trends and Challenges", 2009; 김창봉·임덕환, "원산지제도의 복잡성, 관리수준, 대응전략과 원산지제도 활용성과의 관계 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12(2), 2011, p.95 재인용.

57) 이태영 외 5명,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을 위한 선진사례 수집·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국제원산지 정보원, 2011, p110-111; 손판도·정성엽, "FTA 관세혜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중소기업의 원산지 정보 관리 전략",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28(2), 2015, p.715 재인용.

급하며, 정부의 기업에 대한 원산지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정도, 정부나 민간단체를 통한 기업의 원산지관리 교육 정도, 정부의 원산지확인서 등의 발급에 대한 지원정도가 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원산지관리역량이 높을수록 수출성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3: 원산지 규정 관리정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수출성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 4.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정도

손판도·정성엽(2015)은 중소기업의 원산지 정보관리를 활용함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며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보급·운영 미흡을 지적하였다. 중소기업들의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무료 원산지 관리 시스템인(FTA KOREA)의 보급이 저조하며, 원산지관리와 ERP<sup>58)</sup> 시스템의 연계 미흡으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중복업무의 제거 및 원산지 정보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창봉·임덕환(2011)은 원산지제도의 복잡성, 관리수준, 대응전략과 원산지제도 활용성과의 관계 연구에서 원산지제도 활용성과를 ①검증업무 일원화 ②확인절차 간소화 ③기업 내 원산지 관리체계 구축의 세 가지 변수로 측정하였다. FTA별 상이한 원산지규정에 따른 차별화된 대응, 원산지제도의 관세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응전략, 기업 내 원산지 관리 체제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을 강화한다면 원산지제도 활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들이 원산지제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적용, 원산지 인증요건충족확인, 이행절차 등의 복잡성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58) 전자적자원관리시스템(ERP).

또한 전문가 확보, 정보화 시스템구축, 선별검사관리 등의 관리수준 역량을 강화시켜 차별화된 대응, 관세인하 효과 극대화, 기업 내 원산지제도 체제 등의 전략을 고려하여 원산지제도 활용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원산지관리역량이 높을수록 수출성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4: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정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수출성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 5. 수출성과

Sousa(2004)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발표된 43개 수출성과에 관한 실증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수출성과의 측정수단을 크게 주관적 측정지표와 객관적 측정지표로 분류하였다.<sup>59)</sup>

나도성·윤영호(2011)는 FTA수출 활용률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수입원가가 하락함으로써 수입국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매출 및 경영성과가 개선될 것이라고 하였다.

나도성·윤영호(2011)는 FTA환경 하의 수출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를 통해 FTA상품무역의 핵심메커니즘이자 FTA에만 특유한 원산지활용역량이 수출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원산지활용역량이 증가하면 체약 상대국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으며, FTA원산지활용역량이 기업 특유의 역량이라 할 수 있고 FTA시대에 요구되는 기업의 자원으로 포착할 수 있으므로, FTA 환경에서 핵심적인 수출성과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59) Sousa,2004; 윤영호·나도성, “FTA활용역량과 수출성과 간 관계에 관한 연구: 자원기반관점을 중심으로”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38(2), 2013, p.301 재인용.

### 제 3절 측정항목의 구성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 설계에서 정의한 변수를 정리·요약하면 아래 <표 14>와 같다.

<표14> 측정항목의 구성

변수	조작적 정의		관련 근거
원산지 규정 이해도	1-1	원산지 결정기준	성윤갑(2004) <sup>60)</sup>
	1-2	원산지 증명 물품의 이해	
	1-3	원산지 증빙서류 인식	박철구(2013) <sup>61)</sup>
	1-4	원산지 증명·확인절차	성윤갑(2004)
	1-5	원산지 관리시스템 이해	나도성·윤영호(2011)
원산지 정보 신뢰도	2-1	원산지 증빙 서류의 정확도	박철구(2013)
	2-2	거래 기업 간 원산지정보 협력 수준	
	2-3	비영리단체를 통한 신뢰성 확보	
	2-4	컨설팅업체를 통한 신뢰성 확보	
원산지 규정 관리정도	3-1	운영·관리 전문가 확보 수준	임덕환(2011) <sup>62)</sup>
	3-2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	박철구(2013)
	3-3	원산지 증명서 보관·관리 능력	윤영호·나도성(2013)
	3-4	원산지 관리교육의 충분성	박철구(2013)
	3-5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	박철구·최장우(2013)
	3-6	민간업체 컨설팅 활용	진병진(2016)
원산지 활용 성과	4-1	검증업무 일원화	김창봉·임덕환(2011)
	4-2	확인절차 간소화	
	4-3	기업 내 원산지 관리 체계 구축	
수출성과	5-1	수출 집중도	심재권(2012) <sup>63)</sup>
	5-2	수출	나도성·윤영호(2011) <sup>64)</sup>
	5-3	시장 점유율	
	5-4	매출	

60) 성윤갑(2014), 전개논문, p.14

61) 박철구(2013), 전개논문, p.105

62) 임덕환, 『원산지제도의 도입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11, p.73

63) 심재권·이철규·유왕진, 『중소 벤처기업의 한국·ASEAN FTA를 활용한 수출성과에 관한 연구』, 국제 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13(5), 2012, p.133

64) 나도성·윤영호, 『FTA 환경 하의 수출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36(3),

## 제 4장 실증분석

### 제 1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 1. 설문지 구성 및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원산지 관리역량이 원산지 활용성과 및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고, 문항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2인의 원산지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피드백을 받았다. 이때 응답자의 이해정도, 질문의 배열순서, 응답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문항을 수정,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문항을 삭제하였고, 통계처리를 위해 리커드 5점 척도를 기본으로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원활한 설문을 위해 설문지는 서면, Google 설문지를 통한 인터넷설문지<sup>65)</sup> 2가지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한달 간이며, [www.tradekorea.com](http://www.tradekorea.com), [www.gobizkorea.com](http://www.gobizkorea.com), [www.buykorea.org](http://www.buykorea.org) 의 사이트에서 국내수출기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기업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E-mail에 의한 온라인 설문조사,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총200부 가운데 회수된 설문지는 50부(25%), 중복된 응답 및 오류가 있거나 불성실 답변이 포함된 6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44부(22%)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

2011, p.30.

65) 구글 인터넷 설문 양식,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CM3V9npaGPOETOzTtPC-xosufymo2pTJME0QoaRd4KOUwng/viewform?c=0&w=1>

## 2.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회수된 자료에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sup>66)</sup>(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여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보고, 타당성 검사를 통해 결과가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에 있는지 알아보았다.

셋째, 한국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역량과 수출성과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넷째, 한국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역량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제 2절 연구의 결과 및 해석

###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업종은 기계·정밀기기(자동차부품 포함)과 기타가 각각 2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기·전자와 철강 및 금속, 식료품이 각각 14% 순으로 나타났다. 섬유 및 의류업종이 전체의 7%를 차지하였고, 기타 응답 가운데에는 의료기기 등이 포함되었다. 업종별 응답기업의 전체 구성은 <표 15>와 같다.

66) 선택형 보기가 있는 설문문항(범주형 변수)의 빈도와 비율표를 계산하는 분석으로 모든 데이터 분석의 기본이 되는 분석이며 수집 데이터의 입력 오류를 쉽게 검토할 수 있다.

<표 15> 응답기업 업종별 현황

업종	빈도	비율(%)
전기·전자	6	14.0
기계·정밀기기(자동차부품 포함)	10	23.3
섬유 및 의류	3	7.0
철강 및 금속	6	14.0
석유화학공업	2	4.7
식품	6	14.0
기타	10	23.3

종업원 수의 경우에 61~100명이 2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10명이하와 11~30명이 각각 18.2%, 101~300명 13.6% 순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한정된 기업규모 대상으로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6.8%의 중소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규모가 소기업으로 응답이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자세한 응답기업의 종업원 수는 다음과 같다.

<표 16> 응답기업 종업원 수 현황

종업원 수	빈도	비율(%)
10명 이하	8	18.2
11~30명	8	18.2
31~60명	9	20.5
61~100명	10	22.7
101~ 300명	6	13.6
기타	3	6.8

주력시장의 경우에 미국과 중국이 43%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 인도와 일본이 9.1%를 차지하였으며, 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의 동남아시아국가 주력수출국가로 응답한 경우는 6.8%였다. 기타 국가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주력수출상품은 식품·수산물에서 기계 및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등 매우 다양하였다.

〈표 17〉 응답기업 주력시장 현황

주력시장	빈도	비율(%)
무응답	3	6.8
로컬수출	3	6.8
미국	9	20.5
동남아시아	3	6.8
유럽	2	4.5
인도	4	9.1
일본	4	9.1
중국	10	22.8
기타	5	11.4

응답기업이 현재 FTA를 활용한 수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18〉과 같았다. FTA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34부(77%),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10부(23%)로 나타났는데,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다수의 기업이 FTA에 대한 낮은 인지도 및 FTA 활용 전문 인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답했다.

〈표 18〉 응답기업 FTA 활용 여부

FTA 활용여부	빈도	비율(%)
활용한다	34	77
활용하지 않는다	10	23

## 2. 신뢰성 분석 및 타당성 분석

### 1) 신뢰성 분석

척도의 신뢰성(reliability)은 한 대상을 유사한 측정도구로 여러 번 측정하거나 한 가지 특정도구로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일관성 있는 결과가 산출될수록 그 척도(혹은 측정치)의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척도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내적일관성



(internal consistency), 반복측정 신뢰성(test-retest reliability), 대안항목 신뢰성(alternative-form reliability) 등이 있는데, 내적일관성에 의한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내적일관성은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로써 평가되는데,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내적일관성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내적일관성에 의한 척도의 신뢰성 평가방법은 Cronbach's coefficient(줄여서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는 것이다.<sup>67)</sup>

수집된 설문지의 각 항목에 대한 안정성,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신뢰도 계수로 사용하였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높을수록 바람직하나 반드시 몇 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 흔히 0.8~0.9 이상이면 바람직하고, 0.6~0.7 이면 수용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며, 0.6보다 작으면 내적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sup>68)</sup>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0.6 이상을 측정지표의 신뢰성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0.6 이상을 기준으로 신뢰성을 평가하기로 하는 것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이용하여 내적일관성에 의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변수가 0.7이상의 수치로 나타나 신뢰수준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67) 이학식·임지훈, 「SPSS 18.0 매뉴얼」, 집현재, 2011, p.120.

68) 이학식·임지훈, 동상서, p.121.

〈표 19〉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변수 및 구성개념		항목 수	Cronbach's $\alpha$
원산지 규정 이해도	원산지 결정기준	6	.744
	원산지 증명 물품의 이해		
	원산지 증빙서류 인식		
	원산지 증명·확인절차		
	원산지 검증업무 일원화		
	원산지 확인절차 간소화		
원산지 정보 신뢰도	원산지 증빙 서류의 정확도	369)	.798
	거래 기업 간 원산지정보 협력 수준		
	비영리단체를 통한 신뢰성 확보		
원산지 규정 관리정도	운영·관리 전문가 확보 수준	5	.735
	원산지 증명서 보관·관리 능력		
	원산지 관리교육의 충분성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		
	민간업체 컨설팅 활용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정도	원산지 관리시스템 이해	3	.812
	원산지 관리 시스템 활용		
	기업 내 원산지 관리 체계 구축		
수출성과	수출	3	.839
	시장 점유율		
	매출		

## 2) 타당성 분석

설문을 통해 측정된 항목들이 원하는 개념과 속성으로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 측정도구의 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다수 변수들 간의 관계(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변수들의 바탕을 이루는 공통차원들을 통해 이 변수들을 설명하는 통계기법으로, 요인추출방법에는 주성분분석과 공통요인분석의 두 가지가 있다. 70) 원래의 변수들의 분산 중 가급적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소수의 요인을 추출하는데 목적이 있는 분석을 주성분분석이라고 하며 보다 널리 이용되는 방식

69) 보통 0.3 미만이면 신뢰도를 저해항목이라고 하여 제거하기 때문에, 2-4 컨설팅업체를 통한 신뢰성 확보 문항 제거.

70) 이학식·임지훈, 전계서, p.362.

이므로 본 연구 또한 주성분분석 방식을 이용하였다. 요인을 회전함으로써 어떤 변수가 어떤 요인에 높게 관계되는지 알 수 있는데, 요인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요인구조가 가장 뚜렷할 때까지 요인을 회전시키는 직각요인회전(orthogonal factor rotation)의 배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sup>71)</sup>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 적재량이 낮은 항목은 제외하였다.

요인 분석결과는 <표 20>, <표 21>과 같다.



---

71) 요인구조를 단순화(혹은 명확화)하고 해석이 가장 용이하다.

〈표 20〉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711
Bartlett의 구형성검증	근사 카이제곱	529.293
	자유도	136
	유의확률	.000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선정의 적절성 및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KMO와 Bartlett의 검정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KMO값이 .5보다 크고 Bartlett의 구형성검정에서 유의확률(p값)이 .05보다 작으면 요인분석을 해도 된다는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본 설문 분석결과 KMO값이 .711로 .5보다 크고, Bartlett의 유의확률이 .000으로 .05보다 작기 때문에 요인분석을 해도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표 21〉 요인분석 결과

변수 및 항목		성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원산지 규정 이해도	1-3	.869				
	1-1	.812				
	1-4	.799				
	4-1	.754				
	4-2	.632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정도	1-5		.945			
	3-2		.837			
	4-3		.767			
수출성과	5-3			.915		
	5-2			.906		
	5-4			.891		
원산지 규정 관리정도	3-4				.780	
	3-1				.728	
	3-5				.692	
	3-3				.594	
원산지정보 신뢰도	2-2					.798
	2-1					.795
고유값		3.971	3.032	2.963	2.857	1.601
분산설명(%)		23.361	17.836	17.429	16.806	9.420
누적설명(%)		23.361	41.197	58.626	75.433	84.853

일반적으로 요인과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 값 1.0이상, 요인 적재치는 0.50 이상을 매우 중요한 적재치로 간주한다. 22개의 문항 가운데 요인적재량이 낮은 5개의 항목을 삭제하여 17개 문항을 분석하였고, 분석결과 고유 값이 1.0 이상, 요인 적재치는 대부분 0.50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산지규정 이해도와 원산지 활용성과 변수가 같은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 활용성과 변수는 원산지규정 이해도라는 변수에 포함시켰고,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정도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이해, 활용 및 기업 내 시스템 구축정도를 평가하였다.

## 제 3절 가설 검증

### 1. 단순회귀분석 및 결과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은 한 변수를 종속변수, 다른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독립변수가 한 개인 경우를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두 개 이상인 경우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이라고 한다.<sup>72)</sup> R제곱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의미하는 통계량이며, 수정된 R제곱은 변수가 많아지면 무조건 높아지는 R제곱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R제곱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수록 좋은 모형이다. F값에 대한 유의확률(p값)이 0.05보다 작으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

72) 이학식·임지훈, 전제서, p.304.

가설 1: 원산지 규정 이해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수출성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809	.429		4.217	.000
원산지규정 이해도	.358	.118	.466**	3.026	.005
R제곱=.217, 수정R제곱=.194, F=9.158					

\* $p < 0.05$  \*\* $p < 0.01$

원산지 규정 이해도가 높을수록 수출성과가 높게 나타날 것인지를 살펴보면, 유의확률이 .005로  $p < 0.05$  이고,  $\beta = .466$ 으로 나타나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원산지 규정 이해도가 높은 경우에 원산지 활용성과가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가설 1: 원산지 규정 이해도가 높을수록 수출성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의 경우에 가설이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회귀식의 설명력(R제곱)은 19.4%로 나타났다.

가설 2: 원산지 정보 신뢰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수출성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951	.592		3.295	.002
원산지정보 신뢰도	.298	.156	.317	1.917	.064
R제곱=.100, 수정R제곱=.073, F=3.674					

\* $p < 0.05$  \*\* $p < 0.01$

원산지 정보 신뢰도가 높을수록 원산지 활용성과가 높게 나타날 것인지를 살펴보면,  $\beta = .317$ , 유의확률이 .064로 나타나 원산지 정보 신뢰도와 원산지 활용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 원산지 정보 신뢰도가 높

을수록 원산지 활용성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의 경우에 가설이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회귀식의 설명력(R제곱)은 7.3%로 나타났다.

가설 3: 원산지 규정 관리정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수출성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007	.434		4.597	.000
원산지규정 관리정도	.314	.125	.400*	2.505	.017
R제곱=.160, 수정R제곱=.134, F=6.274					

\* $p < 0.05$  \*\* $p < 0.01$

원산지 규정 관리정도가 높을수록 원산지 활용성도가 높게 나타날 것인지를 살펴보면, 유의확률이 .017로  $p < 0.05$  이고,  $\beta = .400$ 으로 나타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원산지 규정 관리정도가 높은 경우에 원산지 활용성도가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가설 3: 원산지 규정 관리정도가 높을수록 원산지 활용성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의 경우에 가설이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회귀식의 설명력(R제곱)은 13.4%로 나타났다.

가설 4: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정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수출성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632	.313		8.415	.000
원산지활용성도	.148	.099	.251	1.1492	.145
R제곱=.063, 수정R제곱=.035, F=2.226					

\* $p < 0.05$  \*\* $p < 0.01$

원산지 활용성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수출성도가 높게 나타날 것인지를 살펴보면,  $\beta=.251$ , 유의확률이 .145로 나타나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도와 원산지 활용성도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4: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도도가 높을수록 원산지 활용성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의 경우에 가설이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회귀식의 설명력(R제곱)은 3.5%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원산지 원산지관리역량을 원산지 규정 이해도, 원산지 정보 신뢰도, 원산지 규정 관리정도,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산지 규정 이해도가 높을수록 원산지 활용성도가 높게 나타날 것인지를 살펴보면,  $\beta=.466$ 으로 나타나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p<0.05$ ), 원산지 관리정도가 높을수록 원산지 활용성도가 높게 나타날 것인지를 살펴보면,  $\beta=.400$ 으로 나타나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p<0.05$ ). 원산지 정보 신뢰도·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도도가 높을수록 원산지 활용성도가 높게 나타날 것인지를 살펴보면,  $\beta$ 값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유의확률( $p$ 값)이 0.05이상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 2. 다중회귀분석 및 결과

### 1) 상관관계 분석

상관분석은 2개 변수의 선형적인 관련성을 상관계수( $r$ )로 계산하는 통계기법을 말하는데, Pearson 상관, 서열상관(Spearman Kendall), 정준상관분석 등의 기법이 있다.<sup>73)</sup> 두 변수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선형관계에 초점을 두고 두 변수가 선형관계를 갖는지, 선형관계를 갖는다면 어느 방향인지, 그리고 그 관계는 얼마나 큰지를 분석하는데 두 변수가 서로 선형관계를 가질 때 선형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며, 줄여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sup>74)</sup>

상관관계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은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이며 負의

73) 박재민, 「리서치와 통계분석(SPSS & AMOS 활용)」, 인포마 아카데미, 2014, p.17.

74) 이학식·임지훈, 전제서, p.281.



방향으로 클수록 -1에 가깝게, 正의 방향으로 클수록 +1에 가깝게 나타나며,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전혀 없으면 상관계수는 0이다.

**<표 22> 상관관계표**

	원산지규정 이해도	원산지정보 신뢰도	원산지규정 관리정도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정도	수출성과
원산지규정 이해도	1				
원산지정보 신뢰도	.425*	1			
원산지규정 관리정도	.758**	.507**	1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정도	.605**	.458**	.558**	1	
수출성과	.466**	.317	.400*	.251	1

\* $p < 0.05$  \*\* $p < 0.01$

원산지 규정 이해도와 수출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r = .466$ 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p < 0.01$ ). 원산지 정보 신뢰도와 수출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r = .317$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규정 관리정도와 수출성과 관계를 살펴보면,  $r = .400$ 으로 나타나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p < 0.05$ ).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정도와 수출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r = .25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독립변수 모두를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 다중공선성문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유의확률이 0.05이상으로 나와 종속변수인 수출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 결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원산지규정 관리정도(.758)을 제외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상수)	1.209	.607		2.335	0.26		
원산지규정 이해도	.350	.154	.456	2.266*	.031	.606	1.650
원산지정보 신뢰도	.159	.170	.169	.940	.354	.756	1.323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정도	-.060	.120	-.102	-.498	.622	.585	1.710
R제곱=.240, 수정R제곱=.167, F=3.270**							

\* $p < 0.05$  \*\* $p < 0.01$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 : variable inflation factor)와 허용치(tolerance)를 살펴보았으며, 일반적으로 분산팽창계수가 10이상이거나 허용치가 0.1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본 분석에서 변수들의 VIF값은 모두 10 이하였고, 허용치는 0.1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베타 값이 각각  $\beta = .456$ ,  $\beta = .169$ ,  $\beta = -.102$ 로 나타났지만, 원산지 정보 신뢰도·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정도는 유의확률(p값)이 0.05이상으로 나타나 유의하지 않으며, 원산지 규정 이해도와 수출성과 간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p < 0.05$ ). 즉, 원산지관리역량이 높을수록 수출성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가설을 부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설정한 원산지 규정 이해도, 원산지 정보 신뢰도, 원산지 규정 관리정도,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정도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검증결과를 요약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다중회귀분석 가설검증 결과

구분	가설	채택여부
가설 1	원산지 규정 이해도가 높을수록 원산지 활용성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가설 2	원산지 정보 신뢰도가 높을수록 원산지 활용성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기각
가설 3	원산지 규정 관리정도가 높을수록 원산지 활용성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가설 4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정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수출성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기각



## 제 5장 결론

###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FTA의 체결이 증대됨에 따라 FTA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사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향상과 수출확대를 위하여 FTA 원산지 활용역량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많은 국내기업들의 FTA 활용인식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2013년 12월 관세청 보도한 FTA 수출활용률<sup>75)</sup>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FTA 전체 수출활용률은 76.9% 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57.3%에 불과해 기업규모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FTA의 발효가 곧바로 수출기업의 수출증대와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원산지관리역량이 충분히 밑바탕 되어야 하며, 이것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도, 원산지 정보에 대한 신뢰도, 원산지정보 관리정도,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정도와 같은 원산지관리역량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증명 물품· 원산지 증빙서류· 원산지 증명 및 확인절차에 대한 원산지 규정 전반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수출성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둘째, 원산지 증빙 서류의 높은 정확도· 거래 기업 간 원산지정보의 높은 협력 수준· 비영리단체 및 컨설팅업체를 통한 원산지정보의 신뢰성확보 등, 원산지정보의 신뢰도와 수출성과는 관련성이 낮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75) FTA 특혜관세 혜택이 가능한 품목의 수출 중에서 특혜 혜택을 받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된 품목의 수출비중.

셋째, 높은 전문가 확보수준· 원산지 증명서의 보관 및 관리능력과 관리교육의 충분성· 정부의 지원제도 및 민간업체 컨설팅의 활용을 통한 원산지 규정 관리정도가 높을수록 수출성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넷째,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이해 및 활용· 기업 내 원산지 관리 체계 구축과 같은 원산지 관리시스템과 수출성과는 관련성이 낮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원산지 규정 이해도, 원산지 정보 신뢰도, 원산지 규정 관리정도, 원산지 관리 시스템 활용정도로 원산지관리역량을 측정하여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 원산지 규정 이해도와 원산지 규정 관리정도만이 수출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업이 수출성과제고를 위해 원산지 관리역량 확보 시 원산지 규정 이해도와 관리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이해 및 인지도 현황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국내기업의 원산지규정 관심 또는 이해가 낮은 현실이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 규정 이해도를 높여 실질적인 수출성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한국형 원산지규정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기업의 의견수렴과정이 지속적·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일관된 특성이 부족하다는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 앞으로 타결될 FTA 원산지규정 분야의 중점과제는 기체결 FTA와의 조화와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 및 무역구조에 기초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거시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sup>76)</sup> 또한,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원산지규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을 통해 원산지규정 전문가 양성 및 보급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76) 조미진·안경애(2011), 전계논문, p.102.

## 제 2절 시사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특히 거래기업 간 원산지정보 협력 수준이 저조한데,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많은 기업들의 가격정보와 기업 활동에 관련한 비밀 유출에 대한 우려 및 보안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원산지관리시스템의 활용문제를 들 수 있다. 응답한 대다수의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에 대해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활용도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업 내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업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중소기업에게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의 ERP 시스템과 원산지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투자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보조금의 확대지급방안 등이 간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 연구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전문인력 부재에 관한 것이다. 원산지 관리역량 및 원산지 활용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원산지관리업무에 있어 원산지결정기준, 가격결정, 원산지 증명 및 검증과정 전반에 걸쳐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대다수의 기업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추가인력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첫째, 실무자 및 CEO 교육의 진행 및 원산지관리사의 육성, FTA 동영상, 대학 강좌 개설시 비용 지원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원산지관리 실무전문가를 육성 및 보급해야 한다. 셋째, FTA 교육프로그램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전문화 및 중복교육의 최소화로 교육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sup>77)</sup> 설문에 응답한 대다수의 기업이 원산지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속적인 민간컨설팅 시장의 양성을 통해 수출기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7) 인하대 산학협력단, "FTA 활용 활성화방안 연구", 2010, p.106.

### 제 3절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설문응답기업의 업종별 특성에서는 다양한 설문이 수집되었으나 응답기업의 규모에 있어 대다수의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편향된 응답을 보였다. 또한 FTA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많아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다양한 FTA 별로 원산지규정 활용률 및 성과에 관한 비교연구가 진행된다면 협정별 활용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Kawai and Wignaraja, "Asian FTAs: Trends and Challenges",2009.
- Sousa,2004; 윤영호·나도성, "FTA활용역량과 수출성과 간 관계에 관한 연구: 자원기반 관점을 중심으로"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38(2), 2013.
- 곽재민, 「리서치와 통계분석(SPSS & AMOS 활용)」, 인포마아카데미, 2014.
- 김무한,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2010.
- 김석오,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KIEP 전문가 간담회, 2006.
- 김창봉·권승하,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의 원산지 요인이 원산지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원산지 이미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2015.
- 김창봉·박주원, "원산지증명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11(1), 2010.
- 김창봉·이나래,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의 원산지정보관리 요인들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15(4), 2014.
- 김창봉·임덕환, "원산지제도의 복잡성, 관리수준, 대응전략과 원산지제도 활용성과의 관계 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12(2), 2011.
- 김학민 외 3명, 「대학 FTA강좌 참고교재」, KOTRA, 2016.
- 김한성 외 3명,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나도성·윤영호, "FTA 환경 하의 수출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36(3), 2011.
- 남풍우, "자유무역협정(FTA)하에서 원산지검증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11(3), 2010.
-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FTA 원산지규정의 '역외가공' 조항",2005.
- 박명섭·조미진·이병문, "한국 FTA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일관성 분석", 한국무역학회,



- 무역학회지 39(4), 2014.
- 박철구, "원산지정보의 유통 촉진방안에 관한 실증연구(중소기업 FTA 활용촉진 지원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박철구·최장우, "원산지관리역량 및 FTA 활용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14(1), 2013.
- 방호경, "FTA 원산지 규정의 주요 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정책자료 04-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성윤갑, "한국의 원산지표시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세학회지.
- 심재권·이철규·유왕진, "중소 벤처기업의 한국·ASEAN FTA를 활용한 수출성과에 관한 연구", 국제 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13(5), 2012.
- 이나래, "원산지정보관리 역량요인이 기업의 원산지제도 활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 이상진·김무한·김형철, "FTA 원산지규정 분석과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10(3), 2009.
- 이태영 외 5명,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을 위한 선진사례 수집·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국제원산지정보원, 2011.
- 이학식·임지훈, 「SPSS 18.0 매뉴얼」, 집현재, 2011.
- 인하대 산학협력단, "FTA 활용 활성화방안 연구", 2010.
- 임덕환, "원산지제도의 도입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11.
- 정인교 외 3명,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연구 및 실증분석」, 2005.
- 조미진, 안경애,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와 국내기업의 FTA 활용현황에 관한 분석", 무역학회지, 36(3), 2011.
- 진병진, "FTA 원산지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18(2), 2016.
- 한국무역협회, 「사례를 통해 배우는 FTA 원산지 길라잡이」, 2012.

<http://okfta.kita.net>, FTA종합지원센터.

<http://www.ftahub.go.kr>, 협정별 검증방법.

<http://www.customs.go.kr>, 관세청.

<http://www.kita.net> 무역용어.



# 설문지

	No. _____
--	-----------

안녕하십니까? 귀하와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설문은 '한국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역량이 원산지 활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라는 석사논문을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이 논문의 소중한 자료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서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지표로만 이용되고 개인과 기업의 개별적인 사항은 일체 비밀이 보장되오니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응답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협조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11월



지도교수: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경영학박사 임재욱 교수

연구자: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과정 강유정

※ 설문 작성 시 의문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강유정

E-mail : ssfw\_@naver.com

휴대폰 : 010-6636-9052





## 2. 원산지 정보 신뢰도에 관한 설문

■ 원산지정보(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자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의 신뢰도 관련 문항입니다.

문번	평가내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2-1	귀사가 발급하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정확도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2-2	귀사와 귀사가 납품하는 업체 간의 원산지 정보 협력수준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2-3	비영리단체(세관, 세관장 등)의 원산지증빙서류 작성내용 확인을 통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민간 컨설팅 업체(관세법인, 회계법인)를 통해 원산지증빙서류 작성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3. 원산지 규정 관리정도에 관한 설문

■ 현재 귀사의 원산지 규정 관리정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번	평가내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3-1	원산지규정의 운영·관리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3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관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4	원산지 관리교육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5	정부의 원산지관리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6	민간업체의 원산지관리 컨설팅을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4. 원산지활용성과에 관한 설문

■ 귀사의 원산지활용성과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문번	평가내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그러함
4-1	전담부서로 원산지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2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사전심사제도,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제도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확인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3	기업 내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5. 수출성과에 관한 설문

■ 귀사의 수출성과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제 1의 수출비중을 차지하는 국가 및 품목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5-1. 귀사의 총 매출액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수출집중도)은 대략 몇 %입니까?

(약            %)

문번	평가내용	전혀 그렇 지 않음	그렇 지 않음	보통	그려 함	매우 그려 함
5-2	FTA 이후 수출이 증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3	FTA 이후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4	FTA 이후 매출이 증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 성실한 응답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